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39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전현희·조계원·장경태
박선원·이병진·백혜련
김승원·이용우·이재관
염태영·김기표·전용기
채현일·이정현·박희승
이재강·부승찬·이성윤
양부남·김병주·김준혁
윤종균·홍기원·최혁진
박지원·김영배·김동아
장종태·한민수·이상식
박균택·박해철·박지혜
김현정·최민희·오세희
신정훈·윤준병·정일영
황명선·백승아·이광희
전진숙·김용민·노종면
문금주·임호선·서삼석
문대립·김영환 의원
(5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

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4항”
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
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
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한 사람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 ③ (생 략)	제15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 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 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 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 또는 제4항</u> ----- ----- ----- ----- ----- ----- ---